

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안
(정태호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5067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2. 10.

발 의 자 : 정태호 · 안호영 · 진성준
정준호 · 이수진 · 전현희
한준호 · 이정문 · 박해철
김 윤 · 김주영 · 임호선
조정식 · 최혁진 의원
(1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관세청장이 원산지 증명능력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수출자를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하고 원산지 자율증명 허용 또는 증명절차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.

그런데 2022년 원산지인증수출자 대상 점검 결과 약 49%의 기업이 요건을 미충족하고 있는 등 관리가 부적정한 것으로 나타나 사후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. 이를 위해 현재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자율적으로 2년마다 원산지 관리의 적정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는 제도를 의무화하는 등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원산지인증수출자가 2년마다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요건 유지 여부를 자체적으로 또는 외부전문가를 활용하여 점검하도록 하고,

결과에 따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시정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,
이를 위반할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2조).

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6항(중전의 제3항)에 제3호 및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7항(중전의 제4항) 중 “인증유효기간”을 “인증유효기간, 자체점검·시정요구의 절차 및 방법”으로 한다.

③ 원산지인증수출자는 2년마다 제1항에 따른 요건 유지 여부를 스스로 점검하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부전문가로 하여금 점검(이하 “자체점검”이라 한다)하게 하여야 한다.

④ 원산지인증수출자는 자체점검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자체점검 결과 인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.

3. 정당한 사유 없이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자체점검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

4. 정당한 사유 없이 제5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

경우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에 관한 적용례)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을 받거나 갱신한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2조(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)	제12조(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)
① · ② (생 략)	① · ②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③ 원산지인증수출자는 2년마다 제1항에 따른 요건 유지 여부를 스스로 점검하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부전문가로 하여금 점검(이하 “자체 점검”이라 한다)하게 하여야 한다.
<u><신 설></u>	④ 원산지인증수출자는 자체 점검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<u><신 설></u>	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자체점검 결과 인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.
③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원산지인증수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	⑥ ----- ----- ----- -----. ----- -----

한다. 1. · 2. (생략) <u><신설></u> <u><신설></u> ④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및 그 취소의 절차, <u>인증유효기간</u>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.	--. 1. · 2. (현행과 같음) 3. <u>정당한 사유 없이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자체점검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</u> 4. <u>정당한 사유 없이 제5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</u> ⑦ ----- -----<u>인증유효기간</u>, <u>자체점검·시정요구의 절차 및 방법</u>----- -----.
---	---